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52685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6. 24.

판결 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172,963원 및 그 중 30,522,126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은 원고에게 31,172,963원 및 그 중 30,522,126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5. 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1. 22. 접수 제14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2015.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1. 22. 접수 제1416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5. 1. 22.을 기준으로 248,367,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248,367,350원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피고 A은 충청남도 태안군 D 전 201㎡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E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① 태안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2009. 7. 23.자 신용대출금 1,800만 원, ② 태안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2007. 10. 25.자 담보대출금 8,000만 원, ③ 태안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2009. 3. 4.자보증채무금 1,950만 원, ④ 태안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1,000만 원, ⑤ 하나는 행에 대한 2011. 2. 16.자 대출금 3,000만 원, ⑥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9,800,000원, 7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19,964,958원이 있었고, 위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187,264,95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피고 A 소유의 위 D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피고 A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E의 대여금채무이고 피고 A은 물상보증인이므로, 위 대여금채무를 피고 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A이 소외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 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2011. 2. 9. 보증금액 금 3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2. 8.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보증기한을 최종 2015. 2. 6.로 변경하였습니다.

2. 주채무의 내용

소외 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2. 16. 피고 A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2. 2. 8.로 각 정하여 피고 G에게 대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제기한이 2015. 2. 6.로 변경되었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 A은 2015. 2. 6. 위 보증 관련 대출금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 보증사고 발생으로 최종부실처리 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소의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2015. 6. 26. 소의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30,522,126 원(대출원금 30,000,000원 + 이자 금 522,41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채권자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보증건의 보증료율에 연1000분의 5의 비율을 더한 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5. 6. 25.까지 139일간의 미이행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연 0.8%의 율에 의한 위약금을 산정하면 금 91,390원($30,000,000 \times 8/1000 \times 139/365$, 원이하 버림)입니다.

다. 채권보전비용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A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금 559,44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최초 이행일인 2015. 6. 26.부터 현재까지 연 12%입니다.

5. 결 론

가.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30,522,126원, 위약금 91,390원, 채권보전비용 금 559,447원의 합계 금 31,172,963원 및 그 중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30,522,1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구상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태안군 대 704㎡

2. 충청남도 태안군

조적조 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30.45㎡